

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· 운영 개요

□ 설치근거

- 문화재보호법 제72조
-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조 ~ 제10조

□ 설치목적 :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· 심의

□ 기능 :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관련 심의 등

- 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· 해제 및 보호 · 관리 · 활용에 관한 심의
-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
-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· 명예보유자, 보유단체의 인정 및 해제, 전수교육보조자, 장학생대상자에 대한 심의
- 중요한 문화재수리 및 복구의 명령
-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, 매수 및 반출허가
- 기타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□ 문화재 위원회 위원

- 위원수 : 도지사가 위촉하는 55명 이내의 위원
- 임 무 : 위 기능 참조
- 임 기 :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
 - 무형문화재분과(1명) : '10. 6. ~ '11. 1. 20
 - 기념물분과(1명) : '10. 6. ~ '11. 5. 31

□ 수당과 여비 : 조례에 의거 수당 · 여비 등 실비 지급

※ 추신

작성자료를 e-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보내실곳 : sdn68@gg.go.kr 입니다.